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2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채현일・이재정・김원이

박상혁 • 이정문 • 허성무

양부남 • 이해식 • 신정훈

신영대 • 이재강 • 강훈식

오세희 · 장종태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 2).

법률 제 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의2의 제목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폐기·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 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

황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폐기 금지와 현황조사 등의 대상은 제2조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령기록물 관리) 령기록물 관리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 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 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 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 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지원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u>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 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 물의 보호 · 보존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7조의3에 준하여 대통 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 1.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 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폐기·유실되지 아니하도록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호 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황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폐기 금지와 현황 조사 등의 대상은 제2조제1호 의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모 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대 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